

 <p>거창군 Geochang County</p> <p>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</p>	<h1>공 보</h1> <p>제806호 2021. 6. 2(수)</p>	
---	---	---

선 결	기관의 장

고 시

제2021-90호 도로명주소 고시 2

공 고

제2021-792호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 입법예고 4
 제2021-814호 공인 등록 공고 12

회 램									
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: 거창군

편 집 : 기획예산담당관 (055-940-3043, 행정 3043)

※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(<http://www.geochang.go.kr>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
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. 6. 2.

거창군수

- 부여한 도로명주소 :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861-78 등 6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 (변경·폐지)사유	비고
(별 도 열 람)				

○ 도로명주소 사용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는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7조의3 및 제8조,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7조 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-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(☎055-940-3313)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(부여.변경.폐지) 고시 조서

일련 번호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고 시 일		도로명부여사유	이동사유	비고
			도로명	도로명주소			
1	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555-10	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861-78	20210602	20090702	행정구역명(수동면+남상 면) 활용	건물번호 부여	
2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28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국농소3길 83-22	20210602	20090401	임진왜란 때 대사헌 위가 전사하고 그 후손이 나라에서 낙향해 귀농하였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세번째 도로	건물번호 부여	
3	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증촌리 437	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수재길 247-3	20210602	20090401	천재가 살았다는 전설에 따라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	건물번호 부여	
4	경상남도 거창군 옹양면 죽림리 209-2	경상남도 거창군 옹양면 운평길 12-2	20210602	20090401	마을이 낮은 들 가운데 자리하여 늘 안개가 많이 끼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	건물번호 부여	
5	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197, 1197-1	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인평길 334-76	20210602	20090401	마을 모양이 도장과 같이 생겼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	건물번호 부여	
6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872-10, 872-8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갈지1길 62	20210602	20190919	갈지길을 시점으로 하여 분기되는 첫번째 도로	건물번호 부여	

거창군 공고 제2021-792호

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 입법예고

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, 「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5월 28일

거 창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」

2. 개정이유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

3. 주요내용

○ 정수관리대상물품 지정 변경 신설
- 자치단체별 지정·관리 : 총59종

4. 예고기간 : 2021. 5. 28.(금) ~ 6. 17.(목)

5. 의견제출

가.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
2021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(재무과)로
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출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그 밖에 참고사항 등

다. 주소 : (우50132)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(행정과)

라. 전화 055-940-3263, 팩스 055-940-3219, 이메일 ywj3289@korea.kr

6. 기 타

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행정과 재산관리담당 【☎(055)940-3263】
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

2.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 1부. 끝.

입법예고 의견 제출서

□ 조 례 명 :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 건	비 고

거창군 규칙 제 호

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1조의2(정수관리 대상 물품)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정수(定數)를 정한 물품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1조의2(정수관리 대상 물품)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정수(定 數)를 정한 물품은 별표와 같다.</u>

[별표]

정수관리대상물품(제53조 관련)

연번	물품분류번호	품명	정수책정기준
1	25101501	미니버스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2	25101502	버스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3	25101503	일반승용차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4	25101505	미니밴또는밴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5	25101507	스포츠유틸리티차량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6	20101509	승용전기자동차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7	25101601	덤프트럭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8	25101611	화물트럭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9	25101698	화물전기자동차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10	25101703	구급차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11	25101789	소방펌프차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12	25101790	소방물탱크차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13	25101791	소방화학차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14	25101792	소방사다리차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15	25101793	구조공작차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16	25101794	배연차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17	25101795	조연차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18	25101796	무인방수탑차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19	25101797	화재조사차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20	25101798	지휘차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21	25101799	제독차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22	25101910	살수차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23	25101918	저속전기자동차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24	25101924	가드레일청소차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25	25101926	제설차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26	25101927	칼숨살포차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27	25101930	조명차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28	25101959	도로보수차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
연번	물품분류번호	품명	정수책정기준
29	25101963	노면청소차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30	25101969	고소작업차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31	25101981	분무기탑재차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32	25101986	견인트럭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33	25101990	쓰레기수거용트럭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34	25101991	유개트럭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35	25101994	탱크트럭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36	25101998	발전차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37	25131899	무인비행기	정원 및 단위조직수, 업무량
38	39121011	무정전전원장치	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
39	40101701	냉방기	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
40	40101715	향온향습기	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
41	40101787	냉난방기	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
42	41103202	실험용세척기	정원 및 단위조직 수
43	41103901	미량원심분리기	정원 및 단위조직 수
44	41104510	건조캐비닛 또는 오븐	정원 및 단위조직 수
45	41111703	실체현미경	정원 및 단위조직 수
46	41111711	전자현미경	정원 및 단위조직 수
47	41115320	신호발생기	정원 및 단위조직 수
48	41115406	분광광도계	정원 및 단위조직 수
49	41115703	기체크로마토그래프	정원 및 단위조직 수
50	41115705	액체크로마토그래프	정원 및 단위조직 수
51	42281508	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	정원 및 단위조직 수
52	43211503	노트북컴퓨터	정원 및 단위조직 수, 업무량
53	43222805	구내교환장비	정원 및 단위조직 수
54	45111616	비디오프로젝터	정원 및 단위조직 수, 업무량
55	45111705	구내방송장치	정원 및 단위조직 수
56	45111805	비디오편집기	정원 및 단위조직 수
57	45111893	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	정원 및 단위조직 수
58	45121516	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	정원 및 단위조직 수
59	52161545	디지털비디오레코더	정원 및 단위조직 수

관계법령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[시행 2021. 1. 1.] [법률 제17765호, 2020. 12. 29., 일부개정]

제58조(물품관리기준의 설정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(定數)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8. 12. 26.]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[시행 2021. 1. 5.] [대통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., 타법개정]

제57조(물품 수급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취득·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(이하 “물품 수급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작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야 하며, 해당 연도에 취득·사용 또는 처분하려는 예정 수량 및 소요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매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0. 8. 4., 2013. 3. 23., 2014. 7. 7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물품은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수(定數)를 정한 물품(이하 “정수관리대상물품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0. 12. 22.>

[전문개정 2009. 4. 24.]

[시행일 : 2021. 6. 23.] 제57조제3항




공인 등록 공고

「거창군 공인조례」 제6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고,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6. 2.

거창군수

1. 등록사유 : 민원발급용 인증기 추가 설치·구입
2. 등록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: 2021. 6. 2.
3. 등록공인의 명칭 및 인영

공 인 명	규 격	인 영
민원사무전용 거창읍장인 (통합발급기용-종)	2.4cm×2.4cm	
민원사무전용 거창읍장인 (통합발급기용-횡)	2.4cm×2.4cm	
민원사무전용 거창읍장인 (통합발급기용-종)	3.0cm×3.0cm	
민원사무전용 거창읍장인 (통합발급기용-횡)	3.0cm×3.0cm	